

##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형사학의 관점

조병인\*

### 국 | 문 | 요 | 약

이 논문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동기를 형사학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세종실록 전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훈민정음의 탄생은 사법절차와 ‘불가분’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즉위하면서 ‘어진 정치(仁政)’를 다짐한 세종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다가, 한자의 장벽에 부딪혀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보다 앞서서 훈민정음과 사법적폐의 관련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형성을 미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그치고, 거시적 관점에서 창제동기를 조명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어느 연구도 ‘세종이 왜 그토록 각종 사법적폐로 인해 원망과 울분을 품는 백성이 생기는 현실에 민감하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서, 필자가 이번에 ‘사법적폐를 청산해 환난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말하자면, 훈민정음의 탄생과정을 형사학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는 ‘숨은 동기’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19.12.31.4.35>

❖ 주제어 : 훈민정음, 천민(天民), 화기(和氣), 환난, 사법적폐.

\*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서론

### 1. 연구의 내용

약 6백년쯤 전에 세종은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28글자로 된 언문(諺文)을 창제하고 그 뜻을 새겨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컬었다.<sup>1)</sup> 훈민정음은 세계의 수많은 문자들 가운데, 만든 사람, 만든 이유, 만든 원리가 책자로 분명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다. 그래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도 훈민정음을 세계최고의 문자로 꼽는다.

1997년 10월 1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고 매년 ‘세종대왕 문맹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수여하는 현실은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한 마디로 말해준다. 훈민정음은 누구나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자를 없애주는 글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 나절이면 배워서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면서 쉬운 문자다. 소리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쓸 수 없는 것이 없다. 바람소리로부터, 학의 울음소리, 닭울음소리, 개가 짖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을 수 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훈민정음이 창제된 과정은 수수께끼처럼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있다. 그것이 비밀로 된 이유마저도 비밀로 되어 있어 갖가지 상상과 억측이 난무한다. 근래에는 훈민정음의 창제과정을 다룬 「나라말씀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가 ‘역사 왜곡’ 시비에 휘말려 조기에 종영되었다.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공감하는 마당이라, 그것에 대한 연구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1980년대 초엽 수행된 박종국의 연구가 가장 탄탄해 보인다.<sup>2)</sup> 최근의 연구 중에서는 김슬옹의 연구가 단연 돋보인다.<sup>3)</sup> 훈민정음의 창제자 혹은 창제동기를 다각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도 많다. 그 중 일부가 초·중·

1) 홍현보, 『언문』, 이희문화사, 2019, 100쪽.

2)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3) 김슬옹, “세종 융합 인문학의 꽃, 정음학”, 『세종학과 융합인문학』, 보고서, 2019, 218-258쪽; 『훈민정음해례본입체강독본』, 박이정, 2019.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 누구나 훈민정음에 관한 이야기 한두 가지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의 어제서문은 異·爛·便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다. 이로써 보면, 세종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른 관계로, 한자를 몰라서 제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가엾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려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sup>4)</sup>

그런데 형사학의 관점에서 그 맥락을 추적해보면 매우 진기한 ‘숨은 그림’이 시야에 잡힌다. 훈민정음의 탄생은 사법절차와 ‘불가분’ 이상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이 뚜렷하게 보인다. 한마디로, 세종은 즉위하면서 ‘어진 정치(仁政)’를 다짐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해 환란을 차단할 의도로’ 언문(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 논문은 세종의 그런 의도를 형사학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세종실록』을 토대로, 세종이 언문(훈민정음)을 지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함으로써, 장막에 가려져 있는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에 대한 주장만큼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주제도 드물 것 같다. 창제의 동기, 목적, 혹은 배경을 언급한 글들도 실은 ‘창제 이유’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 목적, 배경 등을 말한 것은 모두 ‘창제 이유’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겠다.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백성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백성의 일상적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백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을 내세운 경우가 아주 많다. ‘한자의 중국발음을 정확하게 적기 위해’ 훈민정음이 생겼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sup>5)</sup> 그런 가운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로 ‘사법적폐’를 지목한 이

4) 정윤재,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속의 민본정치”, 『2019년 한국문명학회 학술회의자료집』, 2019년 10월 4일, 61-73쪽; “세종대왕의 민본(民本)정치와 그 현대적 함의”, 『한국학의 랜드마크 세종학의 위상과 비전』, 한국정치학회 한국학세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년 6월 24일, 71쪽.

들이 있었다.

이한우는, ‘세종은 일찍부터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중국 쪽의 법률들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려야 했기에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절실한 과제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이 법률을 몰라서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훈민정음을 지었다고 하였다.<sup>6)</sup>

박현모는, ‘세종은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옥사(獄事)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적고 나서, ‘감옥 등에서 자기의 죄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령이나 아전과 친분이 없어서 엉뚱한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음을 창제한 것’이라고 하였다.<sup>7)</sup>

그보다 앞에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법조문과 관련된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애주려고’를 맨 앞에 제시하였다. 누구나 쉽게 배워서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스스로 피하게 하려고’ 훈민정음을 지었다는 것이다.<sup>8)</sup>

유미림은, ‘한문으로 된 중국법전에 따라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에 해석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와 더불어서, 법조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죄의 경중을 잘못 판단할 여지를 없앨 필요성’을 근원적 동기로 들었다.<sup>9)</sup>

정운재는, ‘법을 몰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성’을 창제 동기로 들었다. ‘모름지기 여염집 무지렁이 백성들로 하여금 법으로 금지된 것들을 알게 해서 두려워 피하게 할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새 문자를

5)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2015, 34-35쪽.

6) 이한우,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동방미디어, 2003, 343-346쪽;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해냄, 2006, 375-406쪽.

7) 박현모, 『세종학개론』, 문우사, 2019, 58-61쪽; 『세종처럼』, 미다스북스, 2014, 254-295.

8) 박현모, “세종의 위민정치”, 『세종의 수성(守成)리더십』, 2006, 삼성경제연구소, 117쪽;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나: 법과 문자”,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리더십 승계』, 훈민정음창제 제574 돌 기념 세종학술회의(제2회) 자료집, 2010년 10월 7일, 3쪽; 『세종이라면』, 미다스북스, 2014, 68-71쪽 & 217-240쪽,

9) 유미림, “세종의 한글 창제의 정치”,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2006, 86-87쪽.

지었다는 것이다.<sup>10)</sup>

이상 소개한 사례들은 공히 훈민정음과 사법적폐의 관련성을 예리하게 짚어낸 선구적 연구로 인정되지만, 합격권에 들 만한 연구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나같이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를 미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그치고, 거시적 관점에서 창제이유를 조명한 연구는 단 한 편도 없다. 어떤 연구도 ‘세종은 왜 각종 사법적폐로 인한 백성의 원억에 그토록 민감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요컨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말하려면 유교나라였던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을 먼저 따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 뿌리가 깊었던 天民觀과 災異論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세종이 한자를 대신할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거시적 이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에는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유학(유교)이념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와 같은 토양 위에 ‘모든 백성은 하늘의 자손이라서(천민관), 정치가 부실하면 백성의 주인인 하늘이 혹독한 시련을 안긴다(재이론).’는 믿음이 신앙처럼 작용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들이 세종실록에 수두룩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지은 배경에는 ‘하늘의 응징(환난)’을 막아보려는 확고한 의도가 있었다고 굳게 믿는다.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백성이 없게 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 바탕에 조선왕조의 전통사상, 형사정책, 사법행정, 사법적폐, 사법개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연결시키면 아무도 몰랐던 진기한 그림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10) 정윤재, “세종대왕의 국가경영리더십 연구: 그의 「천민/대천이물론」과 「보살핌」의 정치를 중심으로”, 『통섭학으로서의 세종학』, 세종탄신 618돌 기념 세종학학술회의 자료집, 2015년 5월 16일, 14쪽.

## II. 조선의 전통사상과 형정

### 1. 대천이물론과 재이론

세종 재위 4년째 해 5월 10일에 부왕 태종이 죽어서 9월 6일에 대모산의 현릉에 장사지낸 세종은, 다음해 3월 인재선발을 위한 문과 과거를 치르면서, 재난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물었다. 즉위한 이후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힘썼는데도, 홍수와 가뭄이 잇따르고 흉년이 거듭되어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응시생들에게 해법을 적게 한 것이다.

경(經)<sup>11)</sup>에 ‘중화(中和)에 이르면 천지가 제자리를 바로잡아 만물이 자라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도리를 다한다면, 재이(災異)도 소멸될 수 있고, 태화(泰和)한 세상도 기약할 수 있겠는가(세종 5년 3월 28일).

임금이 친히 출제한 이 책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암시가 들어있었다. 첫째는, 세종이 즉위한 이후로 한 해도 예외 없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원인이 된 재이(災異)가 악순환하였다는 사실이다. 재이는 임금의 실책에 대한 하늘의 견책을 일컫는 말이다. 말 그대로 천벌(天罰)이라는 뜻이다. 재(災)는 잘못을 꾸짖는 것이고, 이(異)는 꾸짖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 겁주는 것을 말한다.<sup>12)</sup>

어릴 적부터 유학(유교)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조선의 왕들은 ‘代天理物論’<sup>대천이물론</sup>과 ‘災異論’<sup>재이론</sup>을 신앙처럼 믿었다. 전자는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오래된 사상이고, 재이론은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의 주인인 하늘의 견책(환난)이 따른다.’는 전통적 믿음체계다.

그러므로 유교나라의 임금들은 하늘을 무섭고 두렵게 여겼다. 당대 최고 수준의 유학자였던 세종의 머릿속도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경외심)으로 가득

11) 사서(四書)의 하나로 꼽히는 ‘『중용(中庸)』’ 제1장을 말한 것이고, 그 내용은 ‘중(中)’과 ‘화(和)’의 절대성을 설파한 것이다.

12) 동중서(저), 남기현(역), 『춘추번료』 (동양학총서 59), 자유문고, 2005. 105쪽.

차 있었다. 하늘은 인간세계의 군왕들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가혹한 재앙으로 응징을 가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세종실록에 그 증거가 즐비하다.

내가 알기로는, 임금이 부덕(不德)하여 정치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재변(災變)을 보여서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주의시킨다고 한다(세종5/4/25).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백성의 위에 인군이 되었으니, 가뭄의 재앙은 나를 꾸짖는 것이다(세종 5년/5/3).

하늘이 재변으로 나를 꾸짖는데 진상(進上)을 명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면 되겠는가(세종 7년/윤7/9).

의식주가 부족하여 굶고 떠는 백성이 많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니, 천지가 불순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심이 온화하고 양순하면 하늘의 뜻도 순탄해진다(세종 7년/12/9).

정상적인 과세 이외에 세금을 거두는 일이 없게 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심정에 부합하라(세종 8년/1/19)

도성에서 혹독한 화재가 계속되는 것은 하늘이 꾸지람을 내리어 나를 경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늘이 나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장래의 징조를 예고하는 것이다(세종 8년/2/22).

재앙에는 하늘이 내리는 것과 사람이 자초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느끼게 하면, 하늘의 변화가 위에서 감응하는 것이 불변의 이치다(세종 8년/2/26).

근년에 수재와 한재가 반복되는 하늘의 꾸지람이 빈번하여 가만히 그 원인을 따져보면 모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느껴진다(세종 8년/3/20).

금년에는 화재가 나서 거의 성안을 다 태우다시피 하였고, 장마와 가뭄이 전보다 몹시 심하니, 하늘이 사람에게 경계를 보이는 두려움이 이와 같도다(세종 8년/11/5)

이상과 같이 세종은 평소 가뭄·홍수·역질·왕실 우환 같은 환난이 닥치면, 자신의 무능과 실책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여기고, 깊이 반성하는 뜻으로 언행을 삼가면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임금의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뿐이라며, 언제나 천도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했다(세종 12년/3/2).

천민관과 재이론을 동시에 믿었던 조선의 임금들은 ‘화기는 상서를 부르고(和氣화기致祥), 괴기는 재이를 부른다(乖氣괴기致異).’는 믿음으로 정치를 펼쳤다.<sup>13)</sup> 화기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말하고, 괴기(乖氣)는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거스르고’, ‘단절되고’, ‘비정상인’ 기운을 말한다. 세종 역시 천민관과 재이론을 동시에 믿고서 정치의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다.

첫째는, 백성을 부모가 자식 기르듯 어루만져 편안하게 해 주는 것(혜양무수·惠養撫綏)이고, 둘째는,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면어원억·免於冤抑)이었다(세종 5년/7/3). 정치의 목표를 이같이 설정하고서는 재위기간 내내 백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려고 힘썼다.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을 은혜롭게 챙기고 보살피며, 재위 기간 내내 사불기한(使不飢寒)과 자애무육(慈愛撫育)에 힘썼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는 믿음으로, 지방수령을 인견할 때마다 ‘민생을 성심껏 보살피라.’고 상기시켰다. 한 사람이라도 굶는 백성이 없게 하여 모두가 살아가는 즐거움(生生之樂)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 2. 경천애인과 죄수석방

선왕들의 치세 동안에도 그러하였듯이, 세종 역시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국정목표를 백성의 暖衣飽食(난의포식)으로 설정하고서, 모든 백성을 따뜻하게 입히고 배불리 먹여서 천지간에 和氣(화기)가 넘치게 만드는 것을

13) 조병인, “세종의 민본주의(民本主義) 형사정책 연구”, 『고궁문화』 제9호, 국립고궁박물관, 2016년 12월, 147-173쪽.

최우선의 책무로 여겼다. 그런데 화기의 수준은 먹거리의 정도와 함수관계를 갖는다.

한자 和氣의 구조를 해부해보면, ‘禾(벼)가 口(입)로 들어가 米(쌀)이 되어서 氣(힘)를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밥은 백성의 하늘(食乃民天)’이라는 말이 생겼고, 명나라의 영락제는 자신이 거처할 자금성을 지으면서 정전의 이름을 太和殿으로 지었다. 금강산도 식후경, 家和萬事成, ‘먹을 것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 같은 말도 그래서 생겼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米가 氣를 채우게 하려면 禾를 口로 넉넉히 넣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되어야 한다. 만약 극심한 흉년이 닥치면 백성의 배를 넉넉히 채울 쌀이 귀해져, 천지간에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변질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세상이치는 임금들로 하여금 정치의 도달점을 和氣靄愛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세종도 전국 방방곡곡에 따뜻하고 온화한 화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나 백성들이 살아가는 즐거움(樂)을 느끼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천지는 임금들의 뜻을 잘 따라주지 않았다. 임금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가뭄·홍수·태풍·병충해·이상기온 같은 재해가 무시로 닥쳐서 술한 시련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 대형사고, 왕실우환 같은 환난이 수시로 생겨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은 단골처방이 있었으니, 바로 옥에 갇힌 죄수들을 일시에 대거 석방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사법적폐로 누적된 백성의 원역’이 민간의 화기를 떨어뜨려 환난을 불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범죄사건의 수사와 재판 또는 형의 집행에 담당하는 관리들이 형벌을 과하게 썼거나, 판결을 잘못하였거나, 혹은 판결을 장기간 지체하여 백성의 생업을 방해한 데 따른 하늘의 응징으로 여기고, 죄수들을 대거 용서하거나,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한 것이다.

그 이유인즉슨, 범죄에 대응한 형벌은 다른 국가정책에 비하여 그 효과 면에서 매우 특이한 이질성을 갖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정책들은 모두 ‘毒’을 ‘藥’으로 치료하는 것인데 비해, 유독 형사정책은 毒(범죄)을 毒(형벌)으로 다

스리는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종 위험을 동반한다.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강제로 빼앗으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독(毒)이 된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범법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도 형벌은 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이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형벌이 공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면, 죄수가 반성 대신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어서 천지의 화기를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그래서 세종도 재위초반부터 남형(濫刑)·체옥(滯獄)·오결(誤決) 같은 사법적폐에 매우 민감하였다.

노비송사를 처리하면서 법을 어기고 곤장을 과도하게 가한 형조좌랑 정승서의 직첩을 거두고 곤장 1백대를 돈으로 바치게 하였다. 신문을 위해 태장을 쓸 때는 한 차례에 30대를 넘으면 안 되고, 한 번 칠 때마다 한 획씩 그어나가다가 30획이 차면 그쳐야하는데, 승서가 태장을 두 번 칠 때마다 한 획씩 그어서 한 차례에 60대를 가하였기 때문이었다(세종 1년/7/5). 형벌을 삼가라는 특명도 내렸다.

죄가 있어서 곤장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가 없는데도 곤장을 맞게 되면 그들의 원망이 쌓여서 반드시 화기가 손상될 것이니, 앞으로는 형관이 부득이하여 곤장을 쓸 때는 상하 관원들이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함께 같은 청사에서 시행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엄중히 다스리게 하라(세종 5년/5/28).

예전의 어진 임금들은 형벌을 범하는 자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형벌을 썼으니, 어찌 차마 무식한 백성을 중한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회초리 한 대나 곤장 한 대라도 중도(中道)를 잃으면 원망을 불러서 화기를 상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관리가 어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백성이 어명을 위반했을 때는, 전처럼 억지로 무거운 죄로 몰아넣지 말고, 해당 법조문에 따라 처벌하라(세종 6년/8/ 21).

하지만 사법적폐는 사라지지 않았고, 임금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제 하늘의 응징이 닥칠는지 몰라서 긴장의 나날을 보내다 환난이 닥치면 옥문을 활짝 열어서 죄수들을 대거 풀어주었다. 수많은 죄수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되었거나, 판결이 잘못된 사례들을 단시간에 명확히 가려낼 수가 없으니, 다수의 죄수들을 한꺼번에 석방한 것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조정의 원로들도 ‘사법적폐가 환난을 부른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가뭄이 길어지면 형조의 수장들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형벌을 잘못 써서 천번을 있게 한 데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예컨대, 재위 7년째 해에 6월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아니하자, 형조판서 권진이 책임을 느낀다며 임금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세종 7년/6/23)

정승들도 생각이 같았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임금의 근심이 깊어지자, 영의정 황희가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형벌과 옥송이 중도를 잃어서 원한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죄수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면을 청했다. 강제노역 이하의 죄인들을 사면하여 천지의 화기를 늘리고 하늘의 노여움을 그치게 할 것을 건의하여 임금의 결심을 끌어낸 것이다.(세종 22년/4/25)

가뭄이 유난히 심했던 세종 25년(1443년) 7월에는 형조의 고위층이 단체로 사표를 냈다. 농작물이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인데도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자, 형조판서, 참판, 참의 등 형조의 고위관료 세 명이, 형관을 맡고 있는 자기들이 형벌을 적중하게 쓰지 못해서 가뭄이든 것이라며 사직서를 낸 것이다. 임금이 사표를 반려하였지만, 분위기는 항시 그와 같았다.(세종 25년/7/21) 그렇다면 세종치세 32년 동안 죄수들을 어떤 이유로 얼마나 자주 풀어주었을까?

### 3. 세종연간의 사면과 보방

<표 1>은 세종치세 32년 동안 사면령(일반사면)을 선포한 내역을 집계한 것이다. 《세종실록》에, 大赦免·赦免·恩赦·赦宥·放免·赦罪·宥罪·宥免·原免 등으로 대 사 면 사 면 은 사 사 유 방 면 사 죄 유 죄 유 면 원 면 등으로 기재된 경우들을 모두 취합한 것이다.

먼저 사면의 시점을 보면, 재위 전반 16년 동안 17번 있었고 후반 16년 동안 16번 있었다. 사면이 한 번도 없었던 해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산술적으로는 연평균 1회씩 사면이 있었다. 재위 마지막 해에는 1년 동안 사면을 세 차례나 단행하여, 32년 재위 기간을 모두 합쳐서 사면이 가장 많았다.

〈표 1〉 세종치세 32년 동안의 대사면(일반사면)

단위: 횟수

구분	가뭄	나라 경사	왕실 우환	明國 경사	재변	가을 장마	계	
석 방	사(死)	-	5	4	6	1	-	16
	유(流)	7	1	-	-	-	-	8
	도(徒)	6	-	1	-	-	1	8
상 한	장(杖)	1	1	-	-	-	-	2
	태(笞)	-	-	-	-	-	-	-
	계	14	7	5	6	1	1	34

다양한 이유로 34회의 사면이 있었던 가운데 환난(가뭄·왕실우환·재변·가을장마)으로 죄수들을 용서한 경우가 21회로 전체의 약 62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특히 오래도록 비가 끊기면 비장한 심정으로 사면을 단행해 환난이 멎기를 기다렸다. 경축사면 13회도 죄수들의 원역을 해소해 환난을 막으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 비록 온갖 형식의 기우제를 쉬지 않고 지내긴 하였어도, 세종은 그 효과를 믿지 않았다. 명산대천·종묘·원묘·사찰 등에서 비를 빌게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백성의 이목을 고려한 면피용일 뿐이었다.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령 元壇<sub>원단</sub>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비가 꼭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세종 31년/7/4).

사면을 통해 죄를 용서하고 구금을 풀어준 죄의 상한을 보면, 33회 가운데 16번이 사형수까지 포함하는 ‘一罪<sub>일 죄</sub>’까지였다. 모두 대명률의 常赦所不原罪<sub>상사소불원죄</sub>에 속하지 아니한 사형수들도 함께 용서한 경우들이다. 틀림없이 목숨을 건진 사형수가 매우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 외에는 사면의 상한이 유죄 8회, 도죄 8회, 장죄 2회 등이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정종과 태종을 거쳐서 세종의 32년 통치가 끝날 때까지 약 60년 동안 모두 95회의 사면이 있었다. 네 임금의 사면을 단행한 내역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관측된다. 첫째는, 태조와 태종은 자신의 생일에 사면을 한 적이 많았으나, 정종과 세종은 생일사면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둘째는, 태조·정종·태종 때는 명나라의 경사에 따른 사면이 한 번도 없었던 반면,

세종 때에는 6번이나 있었다. 당사자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감정을 풀어주기 위하거나 혹은 비를 비는 마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도 많았다.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특정의 죄수가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세종치세 32년 동안 최소한 25회 이상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가뭇이 극심하여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사형·유배형·강제노역·외방종편 등에 처해졌던 죄수들의 형을 면해주거나, 혹은 빼앗았던 직첩을 돌려줘서 파면을 구제해 준 경우도 최소한 6회 이상 있었다.

<표 2> 세종치세 32년 동안 보방(保放) 내역

단위: 횟수

구분		가뭇	더위	추위	체옥	농번기	우환	재변	계
석방	유(流)	-	-	-	-	-	1	-	1
	도(徒)	10	-	-	-	-	-	1	11
상한	장(杖)	7	4	4	2	3	-	-	20
	태(笞)	-	-	-	-	-	-	-	-
계		17	4	4	2	3	1	1	32

보방(保放)이라고 하는 석방형식도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구금된 죄수를 임시로 풀어주던 사법제도로, 지금의 보석(保釋)과 유사하였다. 오늘날은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보증금을 내지만, 예전의 보방은 보증인을 세우면 구금을 풀어주었다. 그 보증인을 책보(責保)라고 하였다.

<표 2>가 보여주듯이, 세종이 임금이었을 동안 모두 합하여 32회의 보방이 있었다. 연평균 1회 가까이 죄수들을 대거 풀어주고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사 혹은 재판 을 받게 한 것이다. 1422년과 1429년에는 한 해에 보방이 세 차례나 있었다.

보방 사유는 환난(가뭇+더위+추위+우환+재변)이 27회로 전체의 84퍼센트 안팎을 차지하였다. ‘나라의 시련과 형벌의 인과관계’를 신앙처럼 믿었다는 뜻이다. ‘체옥’으로 인한 보방은 사법처리가 지체된 인원이 많아서 경범들을 풀어준 경우도, ‘우환’은 태종이 편치 않았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죄수에게 귀휴(歸休)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강제노역에 처

해져서 지방에 부처되거나 안치된 죄수 가운데 80살이 넘는 고령의 부모가 생존한 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5일의 휴가를 줘서 부모를 만나보게 한 것이다. 그 휴가 일수는 모두 강제노역을 행한 일수에 합산하게 하였다(세종 26년/7/4, 7/12).

종합하자면, 세종은 가뭄·홍수·천둥·번개·벼락·일식·월식 같은 천변이나, 왕실 우환·사고·역질·괴변 등이 닥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죄수들을 대거 풀어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뭄이 닥쳐서 죄수들을 대거 풀어준 빈도가 가장 높았다. 흉년이 닥치면 임금이 형벌을 잘못 써서 하늘이 응징을 가하는 것으로 여기고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 4. 고질적 사법적폐 악순환

유학자이면서 성리학에도 밝았던 세종은 재위초반부터 사법개혁에 힘썼다. 가뭄이나 왕실우환 같은 환난의 원인이 용의자에 대한 무리한 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인조작, 재판거래, 사법농단 등으로 백성의 원역이 누적된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14)</sup> 임금으로 즉위하여 첫 출근하여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도, 용의자가 도망쳐 붙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모나 형제를 구금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세종 즉위년/8/17).

즉위하고 3개월쯤 지나서 전국의 관료들에게 첫 번째 유시를 내릴 때도, ‘수령이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법을 어기고 과도하게 형벌을 써서 화기를 상하게 하였으면 감사가 그 수령을 엄히 다스리되, 함부로 법을 굽혀서 처단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상기시켰다(세종 즉위년/11/3).

백성들이 법을 미리 알고서 범법을 피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금법조문들을 방문처럼 시중에 내걸게 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에게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게 하고, 한자를 모르는 자들은 우리말로 법률조문의 중요한 뜻을 대강 가르치게 하였다(세종 2년/윤1/29).

지방에 수령들을 내보낼 때마다 ‘죄수들을 가엾게 여기고 형벌을 조심해서 쓰라.’고 환기시켰다. 죄를 저질러 구금상태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되

14) 조남욱, “인간존엄성 추구”, 『세종리더십의 핵심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21-165쪽.

어 복역 중인 죄수들의 수용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옥에 갇힌 죄수가 굶거나 떨다가 병에 걸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sup>15)</sup>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이동풍인 관원이 많았다. 기회만 생기면 ‘형벌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고 위반자들을 엄벌에 처해도 효과가 없었다. 임금의 지시로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전직 관원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렸는데, 회양 도호부사 노상의 이름으로, 남형 엄금을 건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관리들이 조그마한 과실을 이유로 아전이나 백성의 등에 갑자기 매질을 가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경우가 흔하니, 금후로는 일절 금하게 하옵소서(세종 2년/11/5).

재위 3년째 해에는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세 차례 반복해서 심리하게 한 법(사죄삼복법·死罪三覆法)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그 다음 날 형조에서 착오로 교형을 참형으로 판결하여 임금에게 이미 아뢰고 난 뒤에 잘못을 깨닫고 자진하여 실수를 아뢰자, 임금이 판서 이발을 호되게 꾸짖었다(세종 3년/12/22, 12/23)

재위 4년 5월에 부왕 태종이 죽어서 명실상부한 국왕으로 거듭 난 뒤에는 사법적 폐척산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 그 신호탄으로 부왕 태종이 죽자마자 난언죄(불충)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게 하였다(세종 4년/윤12/8, 5년/1/4). 관리들의 남형·체옥·오결·죄수학대 등에 대한 임금의 개탄과 우려는 사법적폐의 굳센 생명력을 짐작케 한다.

《대명률》에 制書有違條에, ‘制書(어명)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곤장 1백대에 처하고, 그 취지와 다르게 어명을 이행한 자는 3등을 감한다.’고 한 것은 법을 적용하는 관리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범법자를 말한 것이 아닌데, 근래에 법관들이 조문의 뜻을 오해하고 한때의 잘못으로 왕이 교지로 금한 법령을 범한 자를 으레 제서유위로 판결한다(세종 6년/8/21).

15) 조병인, “세종은 인도적 처우의 개척자였다.”, 『교정』 제511호, 법무부 교정본부, 2018년 12월, 48-53쪽.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중한 법을 적용하니, 내 심히 딱하게 여기 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경한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실정이 중한 편에 가까운 경우는 아무쪼록 법에 알맞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欽哉음재 欽哉, 惟刑之恤哉]’<sup>책 유 형 지 율 재</sup>고 한 말을 내 항상 잊지 못한다(세종 7년/07/19).

4개월 뒤에는 태형과 가축채찍의 사용지침을 정했다. 형조·한성부·의금부·사헌부가 올에 의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관청에서 가벼운 죄를 저지른 아전과 노비 등에 대하여는 회초리 대신 가축채찍으로 형벌을 집행하되, 한번에 50대를 넘기지 않게 하고, 위반한 자는 적발하여 응징하게 하였다(세종 7년/11/17). 서울과 지방의 죄수 가운데 장형(杖刑)으로 신문을 당한 뒤에 죽은 자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세종 8년/11/1).

재위 10년째 해에 경상도 진주에 살던 김화라는 백성이 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악행의 근원을 없애볼 생각으로 《삼감행실도》를 편찬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항시 읽고 외우게 하였다(세종 10년/9/27, 10/3). 전 국민에게 충·효·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그다음 해 2월에는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43가지 금지령의 조문을 요약해 판자에 새겨서 광화문 밖과 도성의 각 문과 종루 등지에 걸어서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내용이 바뀐 줄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세종 11년/2/5).

어린아이나 노비를 고문할 때에 등에는 매를 때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세종 12년/11/21).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인 자는 살인 혹은 강도 용의자가 아니면 구속을 금하고, 죽을죄를 지었어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죄를 정하게 하였다(세종 12/1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형 적폐가 사라지지 않았던지, 사흘 뒤에 임금이 대신들과 국정을 논하다가, “회초리를 맞을 죄를 저지른 죄수에게도 함부로 곤장을 가하여, 그 때문에 상해를 입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개탄하였다(세종 12년/12/1).

이후로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한 관원들이 부임신고를 위해 입궐하면, ‘백성을 불

쌍히 여기고 형벌을 삼가라(恤民慎刑).’는 주의를 빠뜨리지 않았다(세종 12년/윤 12/12, 12/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서울과 지방에서 가혹한 남형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거의 애원 수준의 <훈형교지>를 반포하였다.

형벌을 쓰는 전국의 수령들에게 별도로 공문을 내려, 교지의 골자를 목판에 새겨서 관아의 벽에 걸어놓았다가, 임기가 다하면 후임자에게 확실히 인계하라고 지시하였다(세종 13년/6/12). 또, 교지를 고급종이에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의 현직 관리, 종친, 5품 이상 문관, 3품 이상 무관에게 고루 나눠주게 하였다(세종 13년/6/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남형 악습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채찍사용기준을 개선하였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 내지 20대에서 50대까지 죄를 헤아려 시행하되, 참혹하게 형벌을 쓰지 말도록 하였다. 이유인즉슨,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죄가 의심되면 형벌이 가벼운 쪽을 따르게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둘렀기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죄가 채찍 10대에 해당하여도 50대를 때린다거나, 가죽 두 쪽을 덧대서 채찍을 두껍고 억세게 만들거나, 머리털을 붙잡아 몸을 360도 회전시켜, 태형이나 장형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을 안겼다. 그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저지른 자가 관원의 채찍질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세종 17년/9/30).

하지만 세종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방면에 걸친 혁신을 동시다발로 추진해 사법절차에 자생하는 ‘고질적 적폐’들을 근절하려 하였다.<sup>16)</sup> 수사와 재판 또는 형의 집행에 담당하는 관리들이 강압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장기간 지체하거나, 혹은 판결을 잘못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17)</sup>

16) 조병인, “세종의 <훈형(恤刑)교지>에 관한 연구”, 『법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2호(통권 제8호), 국립경찰대학, 2019년 6월, 21-47쪽.

17) 조병인, “세종의 사법개혁: 오결(誤決)과 체옥(滯獄)을 없애라.” 『검찰동우』 제45호, 검찰동우회, 2019, 40-61쪽.

### Ⅲ. 환난극복을 위한 문자개혁

#### 1. ‘선택과 집중’식 사법개혁

전국의 각급 관청에서 법과 형벌을 담당하는 관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였다. 법조문에 대한 오해나 무지로 인한 오판을 줄이기 위해, 법관들의 법률지식과 수사 및 재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중단 없이 시행하였다. 이때 와서 새롭게 새로운 정책들을 펼친 것은 아니다. 즉위 초반부터 추진해온 법관역량 강화 정책의 추진 강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그 내역을 처음부터 살펴보겠다.

재위 5년째 해 10월에 국법으로 사용하던 중국법전, 행정용어집, 국민교화서 등을 넉넉히 인쇄하여 전국의 관아에 나눠주고(세종 5년/10/3), 문신 중에 정통한 자를 율학의 훈도관으로 배치해 생도들에게 《당률소의》·《지정조격》·《대명률》 등을 가르칠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율문이 문신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문과 이두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 율학생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세종 8년/10/27).

주자소에서 인쇄한 《당률소의》를 중앙과 지방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다(세종 9년/3/23). 분기별 채용과 율과시험에 《당률소의》를 포함시켜 그 성적을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매기게 하였다(세종 11년/6/3)

2년쯤 뒤에는 사인 조서강과 소윤 권극화가 상정소에서 대명률을 번역하게 하였다. 지신사 안송선과 좌대언 김종서가, "《대명률》의 문어(文語)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율문과 대조할 적에 죄의 경중을 오인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당률소의》·《의형이람》 등의 글을 참고해서 《대명률》을 번역하여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할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세종 13년/6/22, 6/23).

《대명률》을 번역하게 하였다는 말은 ‘문어체’로 되어 있어 여간 사람은 해독하기가 어려운 《대명률》을, 이두를 활용해서 조선의 사대부(지식인)들이 널리 쓰는 한자로 풀이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한자를 모르는 일반백성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나마도 이 작업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

록에 후속기사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조서강이 3개월쯤 뒤에 사헌집의로 발령이 났다(세종 13년/10/8). 권극화는 1년 반쯤 뒤인 그 다음해 12월에 지사간원사로 발령이 났지만, 번역작업에 관해서는 실록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세종 14년/12/8). 오직, 사관들의 착오에 의한 중복편집이 의심되는 오류가 보일 뿐이다.<sup>18)</sup>

14년째 해 11월에는 율문을 이두로 번역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정사를 보다가 좌우의 신하들에게, ‘처벌이 중한 법조문을 추려서 이두로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자.’고 제의하였다. 사리를 아는 사람도 율문에 의거해 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 마당이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을 가려서 행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형벌이 무거운 경우들을 알려줘서 법을 위반하는 자가 줄어들게 해보자는 뜻이었다.

그런데 우려를 표하며 말리는 신하가 있었다. 매사에 까탈을 부리기 일쑤였던 이조판서 허조가 심각한 표정으로 폐단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유는 간악한 백성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날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조의 우려를 청취한 임금은 좌우의 신하들에게 고전을 살펴보고 의논하라고 지시하였다. 백성에게 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술책에 가까울 뿐더러, 조상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뜻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며, 심층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조금 뒤에 허조가 물러가자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다. “허판서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면 소송이 넘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점차 심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백성에게 금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법률을 가르쳤던 전례를 찾아보게 하였다(세종 14년/11/7).

허조의 반대 때문이었는지 실록에 후속기사가 보이지 않고, 대신 얼마 뒤에 법률을 가르치던 율학청의 운영을 전면 개편하는 등의 파격적 혁신을 단행하였다(세종 15년/1/5). 또,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보상과 징벌을 내리게 하였다(세종 16

18) 세종 14년 11월 13일자 실록기사로, 지신사 안승선이 《대명률》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전국에 반포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앞서 인용한 세종 13년 6월 22일의 기사와 다른 것 같으나 골자는 같은 것이어서, 사관의 착오에 의한 중복편집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후로 후속기사가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

년/8/26). 하지만 이후로도 세종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에 무리하게 고문을 시행해 실정을 다 확인한 뒤에야 신문을 그치기 때문에 간혹 죄를 억지로 덮어씌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까닭에 신문조서에 미심쩍은 구석이 없어도 나는 약간씩 의심을 품으니, 나의 이런 뜻을 본받도록 하라(세종 19년/11/12).

## 2. 한자의 장벽과 언문창제

2년쯤 뒤에 좌의정 허조가 병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자(세종 21년/11/4), 법정형이 사형인 죄의 법조문을 전국에 반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시켰다. 사형사건을 판결하고 나서 승지들에게, 예전에 독법(讀法)이 있었던 적도 있으나,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울문을 알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죄(死罪) 조문에 대한 토론을 지시한 것이다.<sup>19)</sup>

사죄(死罪) 조문은 모두 간추려도 20여조에 불과하여, 다 뽑아서 증외에 반포하여 일반백성이 낱낱이 알게 하면 사죄를 범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니, 나의 이런 뜻을 새겨서 의정부와 더불어 의논해보라(세종 21년/11/13).

독법은 태종 연간에 여러 가지 법령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관리가 관령이나 이장 혹은 정장 등을 통하여 글이나 말로써 울문을 깨우쳐 주던 제도를 말한다. 서울에서는 조회가 있는 날 오부의 관리가 관령이나 이정을 통하여, 외방에서는 조회가 있는 날 신명색(申明色)<sup>20)</sup>과 율학(律學)생도가 이방별감 혹은 이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법률을 가르쳤다(태종 15년/ 5/6).

하지만 ‘한자(漢字)’의 장벽에 가로막혀 기대했던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

19) 허조는 1439년(세종 21) 12월 28일에 71세로 숨을 거뒀다.

20) 조선 초기,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 고을에 파견되어(큰 고을은 3명, 작은 고을은 2명) 수령들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았던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임명된 사람을 일컫던 말이다. 태종 15년(1415)에 신명색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각종 폐단이 야기되어 2년 뒤에 모두 혁파하였다.

반백성은 아예 한자를 모르니 법을 알려줘도 도움이 안 되고, 한자를 아는 법관들도 법조문을 오독(誤讀)하여 오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보완대책으로 예전부터 이두(吏讀)를 쓰고 있었지만 법의 시행과정에 무수한 오류가 따랐다. 그러자 마침내 세종이 비장한 각오로 문자개량에 착수하였다.

한자의 장벽을 빠져리게 경험한 세종은, 문자가 어려워서 천벌을 받는 일을 기필코 피하겠다는 일념으로, 비밀리에 ‘문자개량’이라는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폐로 인한 환난을 피하려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새 문자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침내 새 문자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건국초기부터 주자학의 명분론에 입각하여 당시 동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던 명나라를 지성으로 섬겼다. 따라서 모든 국제질서가 명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상황에서 한자를 대신할 새 문자를, 그것도 임금이 친히 짓는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에 비견될 만큼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명나라의 훼방이나 응징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이 살아야 외교도 있고 사대도 있다는 일념 하에 독단으로 문자개량을 이뤄냈다.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일반백성이 각종 법령·진술조서·증거기록·공소장·판결문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만약 이상의 논의에 무리가 없다면, 훈민정음의 창제이유에 관한 지식의 지평을 형사학의 영역까지 넓힐 수 있는 이론기반이 탄탄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판단을 바꿔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세상에 내놔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믿는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에는 사법적폐에 대한 백성의 원망과 분노로 천지의 기운이 약해져 하늘의 응징(환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극도의 중압감이 있었다.」

훈민정음이 완성되어 처음 공개된 시점이 세종 25년 12월말임을 상기하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새 문자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경영체제까지 바꿨다는 추정도 가능할 법하다. 재위 18년에 돌연 국가통치권의 대부분을 정승들에게 위임하고, 2년쯤 뒤부터는 즉위초반부터 그토록 공을 들였던 경연마저 중지하였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세종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던 사정과 빈번한 온천행차 등을 떠올리면, 각종 사법적폐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법전·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조서·증거목록·감정서·판결문 등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목숨도 돌보지 않고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하였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 3. 갑자상소에 담긴 암시

1443년(세종 25)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그것을 널리 반포할 목적으로 목공들을 동원해 목판인쇄를 진행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집현전 교리 최항·부교리 박팽년·부수찬 신숙주·이선로·이개·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의사청에서 중국의 《운회(韻會)》<sup>21)</sup>를 언문으로 번역하게 시키고, 세자와 진양(수양)대군·안평대군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세종 26년/2/16)

그런데 세종이 《운회》 번역을 지시한 직후, 세종의 혁신정치를 충실히 뒷받침하던 집현전학사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 등 일곱 명이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단지 《운회》를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 해가 갑자년이었다고 해서 ‘갑자상소’라고도 한다. 갑자상소의 진짜 속내는 일반 백성이 글자를 알게 됨으로써 기득권층인 사대부들의 권위와 권력이 약화될 것을 막으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으나, 초점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소문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다.

먼저, 최만리를 비롯한 일곱 명은 상소문에다 여섯 가지를 적었다. 첫째로, 명나라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사대)에 어긋난다. 둘째로,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져서야 되겠는가. 셋째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정음이 보급되면 어려운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사라져 사대의 근간인 성리학(주자학)이 쇠퇴할 것이다. 넷째로, 형사판결(刑殺獄辭)을 잘못하여(誤決) 원한을 품는 백성이 줄어 들 것

21) 원(元)나라 초기 황공소(黃公紹)가 편집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의 약칭이다.

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다섯째로, 넓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섯째로, 유학공부에 전념해야 할 세자에게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언문 보급을 맡기면 되겠는가.

그런데 집현전 학사들이 내세운 여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면, 나머지 다섯 조목과 섹채와 결이 판이한 한 조목이 섞인 특이점이 잡힌다. 다른 것들은 모두 상소를 올린 일곱 사람의 공통된 생각인 반면, 네 번째로 제시된 반대이유는 누군가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상의 특성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암시를 읽을 수 있다.

첫째는, ‘억올한 사형을 없애는(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임금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임금이 ‘억올한 판결을 없앨(줄일) 목적으로 친히 훈민정음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암시는 그 자체로써도 공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것이 가지는 유일성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일하다는 것은, 그것이 주된 이유이고 최우선의(궁극적이 아니라) 목적이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종이 그밖에 다른 창제동기를 말했다면, 그 내용이 상소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만약 다른 동기도 밝혔는데 상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어제서문에 보이는, ‘나라의 말과 글이 달라서 불편을 겪는 백성들이 가엾어서 친히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3년 뒤에 나온 해례본에 보이는 문구다.

해례본 말미의 ‘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을 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괴로워하였다.”는 대목도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재판의 오결을 막으려는(줄이려는) 데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서문의 중간 부분에서, “훈민정음으로 송사를 청단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비록 정인지가 썼지만 세종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훈민정음과 신주무원록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의 “나라의 말과 글이 서로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보기에 가엾어서 내가 새로 스물여

덥 글자를 만들었다.”는 문구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 대목에서 세종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긴 백성’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깊은 고민 없이 ‘한자를 모르는 무지한 남녀’로 이해하면 사고의 지평이 그 지점에서 멎는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최만리를 위시한 집현전의 일곱 학사가 임금에게 연명으로 올린 상소문의 한 대목과, 세종이 ‘딱하게 여긴 백성’을 연계시키면, 복잡다기한 형사학과 피해자학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활짝 열린다.

세종으로 하여금 깊은 연민과 동정을 품게 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해서, 임금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처지가 딱하게 비쳐진 대표적 백성’은, 한자를 몰라서 억울하고 원통한 처지를 호소하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가족이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인용문에 들어있는 ‘제 뜻’ 부분을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가족의 억울함’으로 바꾸면 열린 공감의 문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그 종류를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마음도 깊이가 다르듯이,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피해자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아마도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가장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을까? 그 극단에는 타살인데도 자살이나 사고사 등으로 잘못 처리된 경우가 위치할 것이다. 본인은 목숨이 끊어져 뒷일을 모른다고 쳐도, 그 유족·친지·친구·연인·이웃·동료·지인 등이 느끼는 충격과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그런데 세종은 그런 비통한 일을 겪는 백성들의 심정을 훤히 알았던 것 같다. 즉 위하자마자 檢屍지침서인 『검 사無冤錄』의 보급과 활용을 건언하였다. 세종은 재위 초반부터 원(元)나라의 왕여가 검시지침서로 편찬한 《무원록》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재위 초반에 형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무원록》에 의거해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사에 관한 공사(公私) 문안에 반드시 연월일을 적게 하였다(세종 1년/2/23). 14년째 해에는 형조에 전지하여, 변사체검시를 아전에게 맡기지 말고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직접 관장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세종 14년/2/16).

17년째 해에는, 《무원록》에 수록된 <검시요령>을 율과 시험과목에 반영하고,

통과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세종 17년/6/8). 21년째 해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검시보고서 서식인 <검시규정집>을 간행하게 하고, 각도 감사와 제주안무사에게도 같은 규정집을 인쇄하여 각 고을에 배포하게 하였다(세종 21년/2/6).

변사자 신고가 접수되면 수령이 직접 살인용의자와 피살자가족의 입회하에 검시를 진행하게 하였다. 지방의 수령들이 직접 검시를 주도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바라보기만 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수령이 검시를 하지 않아 피살 여부를 가리기가 곤란하면, 피살자 가족에게 수령을 고소하게 시켜서 수령을 엄히 문책하게 하였다(세종 21년/9/18). 죽은 시신 이외에 타인의 범죄로 입은 산 사람의 상처는 깊이를 재지 말도록 하였다. 산 사람에 대하여도 상처의 깊이를 재는 일이 있다는 소문이 떠다녔기 때문이었다(세종 21년/11/29).

그다음 해에는 생소한 용어가 많고 설명이 간단해 이해가 어렵던 『무원록』에 알기 쉽게 훈석(訓釋)을 달아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발간하게 하였다. 실무작업은 최치운·이세형·변효문·김황 등에게 맡겼다.

『신주무원록』을 펴내게 한 이유는 백성의 ‘억울한 죽음’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살아있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정음창제에 앞서,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다. 그 책자의 후미에 실려 있는 최만리의 발문에 책자의 진가가 잘 소개되어 있다.

무원록은 刑獄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나침반이다. 사건을 검사하고 보고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비록 皇陶<sup>고요</sup>22)에게 맡기더라도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니, 형옥에 있어서의 잘못은 모두 이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 주상 전하께서 이를 깊이 우려하시고 문신들로 하여금 《고주무원록》을 가져다가 다시 살펴서 훈석을 달게 하고, <검시규정집>과 <법식>을 따로 인쇄하게 하였다. 그렇게 한 연후에 책을 열어보니 일목요연하기가 손바닥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책은 본래 원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조선에 들어와서 주석과 풀이가 상세하고 명확하게 되었다. 앞으로 형관들이 이 책을 보면서 성심껏 검시를 진행하면, 거의 적중하여 백성들의 원한이 깨끗이 풀려

22) 중국 고대의 전설상 성군(聖君)으로 통하는 순(舜)임금을 보좌하였던 아홉 명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법을 세워서 형벌을 정하고 죄수를 가두는 옥(獄)을 지었다고 한다.

서, 백성을 사랑하고 형률을 신중히 하려는 임금의 뜻에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죽은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투명하게 풀어줄 목적으로 편찬한 『신주무원록』을 최고의 언어로 찬양한 글이다. 『신주무원록』을 배포한 뒤에, 사율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과 중앙 모두 《무원록》의 <정관검사> 및 <수리인명 사송규식> 조항과 새로 책으로 발간한 <검시규식>에 따라 검시하게 하였다(세종 24년/2/27).

또, 변사자 신고가 접수되면 형조의 담당 낭청이 현장을 가서 한성부와 함께 시신의 상태를 살피게 하였다(세종 25년/5/16). <검시규정집>을 목판에 새겨서 인쇄한 뒤에 일련번호를 매겨 한성 5부에 나눠주고, 배포한 내역을 명백히 장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한성 5부에서 초검을 마치면 즉시 검시보고서를 작성해 형조에 보내고, 이어서 한성부가 복검하여 그 결과를 형조에 보내면, 중죄를 전담하는 형조의 상복사(詳覆司)에서 초검보고서와 복검보고서를 넘겨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판단을 내리게 하였다(세종 28년/5/15).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종재위 말년에 이르러서는 형관들 사이에 검시의 중요성이 널리 공유된 것 같다. 살인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무덤을 파서 시신을 검시하겠다고 나선 관리에 관한 기록이 유력한 단서다. 31년째 해 3월경 삭천 사람 김영뢰가, 부사 박호문이 김을지와 노민을 매질해 죽인 사실을 폭로하여, 임금이 지승문원사 강맹경과 한성 소윤 허눌을 보내 국문하게 하였더니, 맹경 등이 그같이 말했다고 세종실록에 적혀 있다(세종 31년/3/26).

그로부터 250년쯤 뒤인 영조 연간에 『신주무원록』 개찬에 들어가 정조 16년(1792년)에 《증수무원록》과 《증수무원록언해》가 세상에 나왔다(정조 16년/11/20).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한국학연구원에 염연히 실물이 있는데, 세종실록 어디에도 《신주무원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관들이 실수로 누락한 것일까?

이유는 여하튼지 간에, 세상에 나온 순서로 따지면 훈민정음은 신주무원록의 아우인 셈이다. 훈민정음보다 앞서 태어난 《신주무원록》은 죽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고, 그보다 뒤에 3년 뒤에 탄생한 훈민정음은 살아있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록에 《신주무원록》에 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서 훈민정음과 달리 찬란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신주무원록》과 《훈민정음》은 세종의 민본정신을 튼튼하게 떠받친 쌍두마차였다.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여기면 공감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이다. 실록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주무원록》의 가치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

#### IV. 결론: 끝맺는 말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세종이 언문(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하늘의 응징으로 환난이 닥쳐서 백성이 고통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 뿌리가 오래된 고질적 사법적폐들이 결정적인 촉매역할을 하였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훈민정음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유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생각건대,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의 異·爛·便 정신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 믿는다. 양쪽 공히 그 시작과 끝에 세종이 즉위하면서 다짐한 ‘어진 정치(仁政)’ 표석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필자가 입증을 위해 제시한 논거들은 훈민정음의 진가를 훨씬 더 풍성하게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만약 필자의 관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른 관계로, 한자를 몰라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었던 백성들보다, 남형·체옥·오결 같은 사법적폐로 끔찍한 재앙이 닥칠까봐 365일 오매불망 노심초사한 임금의 속내가 훨씬 더 답답하고 초조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당시의 사법행정이 고도로 투명하고 공정하였다면(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한자를 몰라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백성이 매우 많았어도, 훈민정음이 탄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은 모두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사법적폐와 훈민정음 창제의 인과관계가 그만큼 밀접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의 창제동기를 말할 때는, ‘사법적폐로 인한 天罰을 피하고자 한’ 세종의 의도를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지한 백성들이 법률을 몰라서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옥사(獄事)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문으로 된 중국법전에 따라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에 해석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와, 법조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죄의 경중을 잘못 판단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혹은 ‘법을 몰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같은 정도의 설명에 그치면, 몸통은 제쳐두고 깃털에만 매달리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다만, 훈민정음은 당시의 사법적폐를 근절하는 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법전이 번역되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익히기 전에 창제자가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1443년(세종 15)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3년 뒤인 1446년(세종 28)에 해례본이 나온 뒤에, 불과 3년 남짓 지나서 세종이 숙환으로 숨을 거둬서, 훈민정음이 탄생된 뒤에도 갖가지 사법적폐가 만연하였다.

유력한 단서로,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 등이 상소를 올려서, 사람을 고의로 죄에 끌어넣어 임금의 은총을 받게 하는 풍토를 바로잡을 것을 건의한 실록기사가 있다. 상소인들은, ‘형옥이 잘못되면 원역이 쌓이므로 반드시 형벌을 삼가야 하는데, 다수의 사법관이 명성을 얻을 생각으로, 죄를 반복하여 신문하지 않고, 일단 먼저 협박으로 죄를 씌운 다음에 죄인이 불복하면 고문을 가하여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든다.’고 개탄하면서, 임금에게 특단의 조치를 청했다(세종 28년/5/3).

집현전의 상소가 있는 지 6개월쯤 뒤에, 임금의 특명이 떨어졌다. 그 골자는, 애매한 말을 듣고서 저지른 적이 없는 죄를 교묘하게 덮어씌우거나,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지나치게 고문을 가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백성을 해치는 자는 끝까지 죄를 캐서 엄히 처벌하라는 것이었다(세종 28년/1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형·체옥·오걸 같은 사법적폐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백성이 많았던 모양이다. 29년째 해 4월 승정원에 전지하여, 형벌을 맡은 관원이 죄인의 문초에 관한 일을 임금이나 세자에게 청할 때에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말로써 아뢰지 말고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아뢰게 하였다(세종 29년/4/24).

## 참고문헌

### I. 단행본

- 김광옥, 『세종 이도의 철학: 생생의 길, 생민과 변역』, 경인문화사, 2018.
- 김슬옹, “세종 융합 인문학의 꽃, 정음학”, 『세종학과 융합인문학』, 보고서, 2019.
- \_\_\_\_\_, 『훈민정음해례본입체강독본』, 박이정, 2019.
- \_\_\_\_\_, 『한글혁명』, 살림터, 2017.
- \_\_\_\_\_,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2011.
- 김영수, “세종대의 법과 정치: 유학적 ‘예치주의’의 이상과 현실”,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9.
- 김종명, 김영수,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9.
- 김종성, 『나는 세종이다』, 북오션, 2018.
- 김홍식 『한글전쟁: 우리말, 우리글, 5천년 투쟁사』, 서해문집, 2014.
- 동중서(저), 남기현(역). 『춘추번로』 (동양학총서 59), 자유문고, 2005.
- 박병호, 『세종시대의 법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문화문고), 1986.
- \_\_\_\_\_, 『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 박영규, 『한 권으로 읽는 세종대왕실록』, 웅진지식하우스, 2013.
- 박현모, 『세종학개론』, 문우사, 2019.
- \_\_\_\_\_, 『세종처럼』, 미다스북스, 2014.
- \_\_\_\_\_, 『세종이라면』, 미다스북스, 2014.
- \_\_\_\_\_, 『세종, 실록 밖으로 행차하다』, 푸른역사, 2012.
- \_\_\_\_\_, 『세종의 수성(守成)리더십』,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안성훈·김성돈,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윤백남, 『조선형정사』, 민속원, 1948.
- 이상각, 『이도 세종대왕: 조선의 크리에이터』 추수밭, 2008.

- 이석제, 『나라와 백성을 향한 세종의 번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 이한우,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동방미디어, 2003.
- \_\_\_\_, 『세종, 조선의 표준을 새우다』, 해냄출판사, 2006.
- 임재표, 『조선시대 전통 행형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_\_\_\_,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원형옥(圓形獄)과 흘형(恤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2015.
- 정태현, “조선 초기 사회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8.
- 조남욱, 『세종대왕의 정치철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 \_\_\_\_, 『성군 세종대왕』, 새문사, 2015.
- 조병인, 『세종식 경칭』, 문우사, 2016.
- \_\_\_\_, 『세종의 고(苦): 대국의 민낯』, 정진라이프, 2018.
- 한영우, 『세종평전: 대왕의 진실과 비밀』, 경세원, 2019.
- 홍이섭, 『세종대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
- 홍현보, 『언문』, 이회문화사, 2019.

## II. 논문

- 김성희, 『조선세종대 행정의 일연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76.
- 남도영, “선초(鮮初)의 우마도적-특히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4집, 동국대학교, 1975.
- 박영도, “세종의 유교적 법치: 인정(仁政)과 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2006.
- 박현모,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나: 법과 문자”, 『훈민정음창제 564돌 기념 세종학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2010.
- \_\_\_\_, “세종의 민본정치”, 『세종 리더십의 핵심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_\_\_\_, “세종의 법 관념과 옥사(獄事)판결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1호, 2014.
- 유미림, “세종의 한글 창제의 정치”,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2006.
- 정운재, “세종대왕의 국가경영리더십 연구: 그의 「천민/대천이물론」과 「보살핌」의 정치를 중심으로”, 『통섭학으로서의 세종학』, 세종탄신 618돌 기념 세종학학술회의 자료집, 2015.
- \_\_\_\_, “세종대왕의 민본(民本)정치와 그 현대적 함의: 그의 ‘천민(天民)/대천이물(代天理物)’론과 ‘보살핌’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의 랜드마크 : 세종학의 위상과 비전』, 한국학세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2019.
- \_\_\_\_,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속의 민본정치”, 『2019년 한국문명학회 학술회의자료집』, 2019.
- 정태현, 『조선 초기 사회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8.
- 조남욱, “세종대왕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제6집, 한국유교학회, 1993.
- \_\_\_\_, “세종의 인간존엄성 추구”, 『세종 리더십의 핵심 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조병인, “세종의 민본주의(民本主義) 형사정책 연구”, 『고궁문화』 제9호, 국립고궁박물관, 2016.
- \_\_\_\_, “세종의 <홀형(恤刑)교지>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8호), 국립경찰대학, 2019.
- \_\_\_\_, “세종의 사법개혁-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학의 랜드마크 : 세종학의 위상과 비전』, 한국학세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2019.
- \_\_\_\_, “세종의 지성사대: 이기기 위한 저주기”, 『세종의 외교와 문화정책』, 세종학강좌 자료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 \_\_\_\_, “세종의 부민고소금지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국립경찰대학, 2019.
- 최영선, 『한글창제 반대상소의 진실』, 신정, 2009.
- 홍현보,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에 나타난 훈민정음 창제기록”, 『훈민정음, 누가 어

떻게 만들었나?』,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학술강연회 자료집, 국회의원  
서영교·한글학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문화연대, 2018.

\_\_\_\_, “이두와 언문: 조선의 문자들”, 『세종의 외교와 문화정책』, 세종학강좌자  
료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 III. 논란

조병인, “세종, 형사정책의 표본을 보이다(상)”,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35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중)제136호, 2015; (하) 제138호, 2016.

\_\_\_\_, “세종은 인도적 처우의 개척자였다.”, 『교정』 제511호, 법무부 교정본부,  
2018.

\_\_\_\_, “시험대에 오른 국가경찰의 활로”(1), 『수사연구』 제422호, 수사연구사,  
2018; (2) 제423호, 2019.

\_\_\_\_, “세종의 사법개혁: 오결(誤決)과 체옥(滯獄)을 없애라.” 『검찰동우』 제45호,  
검찰동우회, 2019.

\_\_\_\_, “‘훈민정음’ 탄생에 숨겨진 비밀”, 여주신문 제1088호, 한글날(10월 9일) 특  
집호, 2019.

\_\_\_\_, “조선 초기 왕들의 고민: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인가?”, 『검찰동  
우』 제46호, 검찰동우회, 2020(발간예정).

### IV. 기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 (연대기 1~19집), 1980.

\_\_\_\_\_, 『세종성왕육백돌』,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법적 실현』, 30주년 유관학회 공  
동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19.

## A Study on why King Sejong Invented Hunminjeongeum: Perspective from Criminology.

Cho, Byung-in\*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variety of hidden motives in regard with birth secret of the Hunminjeongeum(Korean script) from an angle of criminology, which has not yet been introduced so far by anyone. The author empirically proved the new historical fact that invention of Hunminjeongeum was closely related beyond intimation with the judicial procedure, by diversly analyzing the articles registered in the Sejong Sillok all-round.

It looks like that King Sejong went through invention of Hunminjeongeum since he had convinced the necessity of more easier script than Chinese character, which is very difficult to learn how to read and write, while exerting to eradicate deep-rooted evils that are self-begotten in the judicial process.

There are sizable precedent researches that microscopically focused on the close relation of Hunminjeongeum and accumulated evil of in the field of jurisdiction, but there is no research work that has illuminated the same subject macroscopically. So far no one revealed the reason why King Sejong so seriously accepted dissatisfaction and resentment caused by long lasting evil in the field of judicial dimension.

The author's conclusion is that King Sejong primarily invented Hunminjeongeum in order to avoid heaven's sanction as a punishment for failing in governance or abusing public power. In that sense, this is the first work that disclosed the hidden motive of the birth of Hunminjeongeum(Korean script) from criminological viewpoint.

❖ Key words: Hunminjeongeum, son of heaven, warm and peaceful vitality, hardship(disaster), deep-rooted evils in the judicial procedure.

---

\* Former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